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대가의 지급)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67조(대가의 지급)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지급 건에 대하여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116일 지연 처리

사례2> 영화배급사 프로그램 대금 지급을 사무관리비로 지급하면서 5일 지연 처리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·구매 후 대가를 지급하면서 14일 지연 처리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시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